

# 소 장

원 고 별지1 기재와 같음

피 고 1. 국방부 장관

2. 감사원장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행정소송) 청구소송을 다음과 같이 제기합니다.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1.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2010. 6. 23. 자로 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의 주체가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피고들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별지2> 각 항목 기재 정보의 보유자들입니다.

## 2. 피고의 정보 비공개결정

원고들이 2010. 5. 31. 피고들이 보유한 <별지2> 기재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0. 6. 2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sup>1)</sup>에 근거하여 <별지2> 각 항목과 같이 정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갑 제 1호증의 1내지2, 결정통지서)

## 3. 피고들의 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위법성

---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중략>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후략>

## 가. 피고들의 정보 공개 거부 사유

이는 <별지2> 각 항목 기재와 같습니다.

## 나. 피고들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위법·부당성

그러나 피고들의 이와 같은 공개거부 결정은 정보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들이 공개를 거부한 각 정보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1)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배경

(가) 2010. 3. 26.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을 즐기던 우리 국민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백령도 부근을 순회중이던 군사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천안함의 침몰로 말미암아 46명의 군 장병이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는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천안함이 침몰한 후 침몰된 선체인양 및 시신인양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천안함 침몰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천안함의 침몰에 관한 다양한 의견의 분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수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어뢰’에 의한 침몰가능성만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였을 뿐입니다. 최근에는, 천안함에 관하여 합리

적인 의심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여러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검찰에 의하여 명예훼손등을 이유로 기소까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 제2호증, 검찰, ‘천안함 좌초’주장 신상철씨 기소, 2010. 8. 27. 오마이 뉴스기사)

(나) 여러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천안함이 침몰된 원인에 대하여 분석한 바를 결과로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북한산 어뢰에 의한 침몰(국방부의 조사결과)
- ② 좌초에 의한 직접적 침몰
- ③ 기뢰에 의한 침몰
- ④ 1차원인 좌초, 2차원인 별개의 충돌원인(잠수함 충돌, 기뢰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에 의한 침몰

천안함이 침몰될 당시는 국방부와 정부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가, 6월 지방선거등 정치적 변수를 고려한 나머지, 5월 20일 선거를 2주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천안함의 중간조사결과로 ‘북한산 연어급 잠수정이 천안함을 향해 발사한 어뢰’에 의하여 천안함이 침몰된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기에 국민적 의혹은 더욱 가중되었고, 결국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6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주었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다) 정부의 조사결과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심을 가진 시민단체, 전문가, 기자들은 본격적으로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산 어뢰’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다른 원인에 의하여 침몰되었다는 과학적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믿을 수 없는 구석이 많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다음 13가지 사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부의 진술변화를 낱낱이 기재한 의혹 사항을 정리하여 <별지3>에 첨부합니다.

## (2) 정보공개청구대상이 된 각 정보비공개 결정의 내용과 그 정보들이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

(가)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와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

2010. 5. 20. 천안함 침몰원인을 조사해온 민·군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20일 “천안함이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의 중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침몰했다”고 발표(이하 ‘중간발표’)하였습니다. 합조단은 그 증거로 ‘생존자와 백령도 해안 초병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생존자들은 거의 동시적인 폭발음을 1~2회 청취하였으며, 충격으로 쓰러진 좌현 전시병의 얼굴에 물이 튀었다는 진술과, 백령도 해안 초병이 2~3초간 높이 약 100m의 백색 섬광 기둥을 관측했다’는 진술내용 (갑 제3호증, 민·군 합동조사단 천안함 중간조사 결과, 2010. 4. 8. 자 국방뉴스)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군이 보유하고 있는 TOD 영상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밝혀줄 가장 유력한 증거로 부각되었습니다. TOD는 해군과 육군이 24시간 경계를 서면서 휴전선 GP와 GOP, 해안소

초와 함대의 이동상황 및 적의 침투를 빠트림 없이 촬영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합조단에서 발표한 100미터의 백색 섬광기둥은 물속에서 폭발이 일어날 경우 고압의 충격파와 가스발생으로 인하여 물기둥이 솟게 된다는 버블제트현상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건 당시의 TOD 영상에는 천안함이 침몰할 당시 상황이 있는 그대로 녹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천안함이 좌초하였는지 혹은 어뢰의 공격으로 인하여 침몰하였는지를 객관적인 동영상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좌초냐, 어뢰에 의한 공격이냐의 핵심 논점이 되는 버블제트현상이 과연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010. 9. 13. 국방부는 최종보고서발표를 통해 TNT 250kg~360kg규모에 의한 수중어뢰에 의하여 수중폭발 되었다는 시뮬레이션결과가 이 사건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갑 제4호증, 천안함 조사 결과 보고서 중 폭발에 관한 내용 일부) 하지만, 중간발표에서 원래 제시한 규모보다 약 1.44배나 되는 폭약이 폭발했는데 천안함의 견시병들이 단지 ‘얼굴에 물에 튀는 정도’ 밖에 물을 맞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갑 제5호증, 야당·시민단체 “천안함 국정조사를”, 2010. 9. 14. 자 한겨레기사)

실제로 군도, 이 사건 초기에는 물기둥 현상이 목격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으며 생존 병사들도 물기둥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군

이 원래 이런 주장을 한 근거는 백령도 초병이 ‘물기둥’ 이 발생했다고 진술한데서 비롯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초병들의 진술서가 공개되어 초병들이 본 것은 ‘물기둥’ 이 아니라 ‘낙뢰였으며 ‘낙뢰’ 를 관측한 방향조차 천안함 침몰 방향과 달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갑 제6호증, 수중 폭발 입증할 ‘물기둥’ 목격자·TOD 영상도 없어, 2010. 9. 13.자 경향신문기사)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합조단의 발표이전에도 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건 당시의 TOD 영상을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군은 중간발표 당일에도 이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TOD 영상 및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고 국방부장관은 사고 직후 열상감시장치(TOD)로 침몰하는 천안함을 40여분간 촬영하고도 모른 채 하다 공개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1분20초짜리로’ 편집해서 공개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영상자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침몰당시의 동영상을 담은 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침몰전 정상기동장면인(밤9시 4분 6초부터 3초간), 침몰직후 분리된 함수-함미 장면(9시24분18초부터 1분 1초간, 함수 침몰 장면(9시 25분 20초~10시9분 2초)등의 3가지 동영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갑 제7호증, 감사원, “軍 TOD 영상 편집공개해 국민불신 초래”, 2010. 6. 10.자 머니투데이 기사)

원고가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피고가 임의대로 편집한 것이 아니라 천안함이 침몰되기 전과 침몰당시상황 그리고 침몰후의 상황을 찍은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작성된 천안함의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KNTDS 등의 항해관련 자료 및 문서 사본 일체, 혹은 이를 평문화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혹은 그 목록.

#### 1) KNTDS

KNTDS자료와 함께, 관련된 각종 군부대의 지시사항도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평상시 군사기밀작전을 제외한, 천안함의 사고와 관련된 정보는 1·2급비밀이 아닌 이상, 군사기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분류하여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우선, KNTDS는 해상에서 작전 중인 해군 함정의 움직임과 주요 레이더 기지에서 포착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지휘통제실의 컴퓨터 화면에 보여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함정의 제원, 침로(진행 방향), 속도 등의 정보가 표시·기록되며, 이 자료는 사고 당일 천안함이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얼마의 속도로 기동했는지를 초 단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TOD와 함께, 천안함의 정확한 사고발생위치와 침몰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사고규명 1차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KNTDS를 공개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가 내놓은 천안함의

사고 발생 지점과 한국형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KNTDS · Korean Naval Tactical Data System)상의 천안함 소멸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24일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질의 과정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KNTDS상 천안함은 정부가 발표한 사고 발생 지점(124도36분02초)에서 북서쪽으로 600m 떨어진 곳(124도35분47초)에서 밤 9시25분에 사라졌습니다. 공식 발표된 사고 발생 시각인 밤 9시22분과 3분의 차이를 보입니다. 실제로 당시 국방부 장관도 ‘좌표가 차이가 날 경우 시정을 하겠다는’ 모순된 발언을 합니다. KNTDS는 전자화되어 좌표를 시정하고 말고 할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갑 제8호증, “천안함 KNTDS 소멸, 軍발표 침몰지점서 600m 떨어져”, 2010. 5. 25. 민중의 소리 기사)

만일,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좌표대로라면 천안함은 북한 어뢰에 맞은 뒤 원래 움직이던 방향으로 3분간 계속 이동한 것이 되는데, 어뢰를 맞고도 3분 동안 약 6노트의 정상 속도로 600m를 이동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02년 연평해전 당시에 도 합동참모본부의 설명도 이 사건과 같이 일관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도, 여야 진상조사 특위에서 KNTDS를 조사해 국민들에게 그 진실이 알려진 경험이 있고 이를 통해 오히려 국민들의 단결을 고취하면서 국가안보가 더 단단하게 다져진 점을 고려할 때, KNTDS를 공개하면 국가안보가 침해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갑 제9호증, 김충환 “군 당국, KNTDS 즉각 공개하라”, 2010. 4. 8. 자 뉴스엔뉴스 기사)

2010년 3월 26일 이후 천안함 관련 지시사항 문서일체와 KNTDS관련

자료의 경우에도 각종 군부대의 지시사항과 KNTDS자료도 모두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상시 군사기밀작전을 제외한, 천안함의 사고 및 그 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이를 분류하여 공개하여도 군사기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 2) 항적기록

천안함 항적기록의 경우도 비공개결정을 하였지만, 이 역시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항적기록은 함정의 세부 항해기록이 남아 있어 공개될 경우, 특정기지의 일출항 세부정보, 작전구역내에서의 기동경로, 속도등이 노출되어 작전 보안상 공개가 제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적기록은 대부분 대외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추후에 사실 조회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기입한 사항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군의 전술체계가 노출된다거나 작전수립에 장애를 받는다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다)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천안함 관련하여 주고받은 해군 혹은 해경의 교신기록 사본, 혹은 평문으로 정리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혹은 그 목록

(라) 3월 26일 오후 9시부터 3월 30일까지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2함대사령관이 구조, 인양, 경계, 추적 등과 관련해 내렸던 지시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그 자료 및 문서들의 목록

3월 26일 당시 사건을 정확하게 재연해 낼 수 있으려면, TOD, KNTDS와 함께 천안함의 사고와 관련하여 사건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각종 보고서들이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원고들은 ‘모든 해군·해경’의 교신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안함과 관련된’ 해군·해경의 교신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일, 합참의장은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 천안함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용산구 합참본부 합참의장실로 돌아가 피곤하다고 잠을 잤습니다. 국가 중대사가 발생했는데 피곤하다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피고 국방부장관이 설명해야 합니다.

도저히, 단순한 좌초정도의 보고를 받지 않고서는(만일 ‘어뢰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단 하나라도 보고했다면 이러한 직무유기를 범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 사고처리상의 과실들을(실제로 천안함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당한 피고인들의 변론에 필수적인 자료가 됩니다) 추후에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합니다.

(마) 2008년 이후 천안함의 수리와 정비 일지 일체, 관련된 문서목록

피고 국방부장관은 정비관련 자료 일체가 함정의 무장과 제원 및 성능이 노출되어 공개가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비공개사유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군사전문가 인터넷 토론 사이트(조선일보기자 유용원의 군사세계등)에서는, 전직 천안함 근무 장병을 비롯한 군사전문가들이 천안함과 같은 프리깃 함(구축함)의 무장 및 제원에 대해서 전부 낱알이 밝혀놓고 있어(갑 제10호증, 유용원의 군사세계 토론코너중 초계함에 관한 부분) 이러한 사실적인 정보의 노출로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는다는 주장은 후안무치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명백히 천안함의 파괴원인 중 하나인 ‘함선의 노후화정도에 따른 피로파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천안함의 수리와 정비일체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은 이상, 정비 및 수리목록도 ‘비밀’ 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만이 천안함의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로파괴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 故 한주호 준위의 사망 관련, 고 한주호 준위의 사고 당시 임무, 사망으로 이끈 작전 수행 지점, 그리고 사망 이후 해병대, 해군,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그 문서 목록

한준호 준위가 사망하기 까지 한준호 준위가 받았던 임무가 무엇인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실제로 한준호 준위는 천안함의 침몰장소와 수백미터 떨어진 제3의 장소에서 수색작업을 했으며, 이는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어뢰나 기뢰가 아닌 제3의 충돌원인으로 인하여 이를 수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여러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갑 제11호증, KBS “고 한주호 준위 ‘제3 장소’에

서 사망”, 2010. 4. 9.자 미디어 오늘 기사)

실제로, 한 준위와 함께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UDT동지회의 한 관계자가 KBS에 한 준위의 사망지점을 '용트림 바위 바로 앞에 있는 부표'라고 확인해 준 것, 그리고 UDT동지회가 이 부표가 설치된 곳에서 한 준위의 추모제를 지낸 것 등을 근거로 들며 “고 한 준위가 사망한 지점이 군의 발표와 달리 용트림 바위 앞바다라면 과연 한 준위의 정확한 임무는 무엇이었는지 군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사) 국방부가 5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증거문서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서, 북한이 이란과 중남미 등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소개 책자(카달로그)', 혹은 CHT-02D 어뢰의 소개자료 혹은 그 설계도. 그리고 CHT-02D의 부품으로서 천안함 침몰에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추진체 및 스크류의 근접 촬영 사진 일체

(야) 천안함과 북측 CHT-02D 어뢰의 잔해물로 여겨지는 증거물품에서 검출된 화약과 알루미늄 산화물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보고서 일체

합조단은 실제로 침몰장소 근처에서 북한산 어뢰를 쌍끌이 어선을 통하여 수거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혹들로 인하여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 ① 어뢰가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부식되었다는 점,
- ② 어뢰의 재질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부식이 되려면 물에 오랫동안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천안함 침몰이후 2달정도를 경과한 시점에 건

저울린 것이라는 점,

③ 어뢰에는 원래 페인트 칠이 되어 있어 천안함을 파괴할 정도의 열과 충격이 가해졌는데 어뢰 내부가 휘어지는 등 손상이 되어야 함에도 그 형체가 멀쩡하고, 게다가 어뢰에 푸른 색 ‘1번’이라고 기재된 페인트칠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

④ 또한, 어뢰가 폭발할 때는 알루미늄이 산소와 급속도로 결합하여 비결정 산화 알루미늄( $Al_2O_3$ )<sup>2)</sup>이 발견되는데 국방부에서 발표한 모의 폭발실험의 데이터는 수산화알루미늄( $Al(OH)_3$ )의 산소/알루미늄 비율과 놀랍도록 유사한 사실을 발견한 점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합조단은 천안함 침몰장소에서 수거한 실제 어뢰의 어뢰 설계도라며 이를 공개했는데 설계도상의 어뢰와 실제 공개된 어뢰가 다르다는 문제제기에 한 달이 넘어서야 “시간이 촉박해 실수로 비슷한 다른 어뢰 설계도를 공개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합조단은 조사결과 발표시 결정적 증거로 어뢰와 북한산 무기 소책자에 있는 어뢰 설계도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보안상 공개할 수 없었던 무기소책자는 실제로는 몇 장의 종이와 CD라는 것이 추후에 밝혀졌습니다. (갑 제12호증, “북한 어뢰 증거가 카탈로그? 자료 보고 허무했다”, 2010. 6. 24. 자 오마이뉴스 기사)

또한 합조단은 5월 20일 조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철의 부식상태를 봤을 때 함수와 어뢰 추진체의 부식정도가 비슷하다고 발표했으나 6월 29일에는 재질, 부분 별로 부식 두께 차이가 심해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갑 제13호증, 해난구조 전문가 “천안함 어뢰추진체는 물

2) 따라서 알루미늄 산화물의 분자로 수소가 결합되지 않는 것. 수산화알루미늄은 물속에서 알루미늄과 물( $H_2O$ ) 분자가 결합될 때만 발생하게 됨.

속서 4~5년 된 것”, 2010. 7. 13. 자 한겨레 기사)

합조단이 과학적 증거로서 제시했던 알루미늄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로 “결정질 알루미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조사단은 “소량 결정질 알루미늄이 발견되었다.”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갑 제14호증, “이것이 과학인가?”...천안함 합조단의 ‘3대 과학적 결함’, 2010. 6. 21. 프레시안 기사) 이는, 합조단이 중요한 과학적 증거로 제시한 문제인 만큼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합조단의 명확한 과학적 해명역시 필요합니다. 국회 및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재검증절차를 위해서라도 정보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연어급 잠수함의 제원, 성능, 잠항능력, 장착 어뢰 등 공격능력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일체

국방부는 천안함을 침몰시켜 내려왔다는 북한 잠수정에 대하여도 합조단은 2척의 북한 잠수함이 천안함 침몰 2-3일전 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언론사들의 제보에 따르면 당시를 촬영한 영상이 “영상불량”으로 두 척의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하는 등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갑 제15호증, 북 잠수정 기지 이탈, 제대로 확인했으나, 2010. 6. 25. 자 한겨레 기사)

또한, 최초 4월 2일 “북한 잠수함은 오랫동안 잠항할 능력이 없다.”라고 북한 잠수함의 공격 능력을 낮게 평가했으나,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천안함 진상특위에서 연어급 잠수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입장을 바꾸며

북한 잠수함의 공격 능력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갑 제16호증, 소형 잠수정에서 1.7톤짜리 중어뢰 발사했다?, 2010. 5. 21. 자 민중의 소리 기사)

연어급 잠수정의 존재결과에 대해서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방부는 구글 사진을 제시하며 연어급 잠수정의 폭이 3.5m라고 주장해왔으나 7월 15일 국방부가 배포한 ‘천안함 피격사건 설명자료’에는 잠수정의 폭이 2.75m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연어급 잠수정의 폭에 대해 질문하자 2.75m가 맞다고 대답했다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3.5m라고 대답을 번복하는 등(갑 제17호증, 참여연대 참관 보고서)으로 그 존재결과에 대해서도 그 진위를 알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공개가 필요합니다.

(차) 디젤엔진실, 가스터빈실 촬영사진 일체, 절단면 사진 일체를 포함하여, 천안함 인양 후 촬영된 천안함 함체, 부품 사진, 입체영상자료 일체

사고의 확인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사고체’입니다. 살인사건에서 시체에 대한 명확한 부검 없이 사망원인을 진단할 수 없듯이, 이 사건처럼 대량사고를 낳은 상황에서 침몰된 함선의 함체, 부품사진, 엔진실등 파괴현황의 내부정보 공개 없이는 침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습니다.

천안함과 관련한 국방부 측의 거짓말은 아주 간단한 사실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최초, 합조단은 천안함 스크류 프로펠러의 변형은 ‘해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다가 ‘급정지’ 때문이라고 설명을 바꿨고,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공개했으나 시뮬레이션에서 스크루가 휘어진 방향과 스

크류가 실제 휘어진 방향이 정반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갑 제18호증, “천안함 합조단, 스크루 변형 원인 오류도 시인”, 2010. 7. 9. 자 피디저널 기사)

이는 좌초된 상황에서 천안함이 동력을 후진하여 모래톱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스크루 프로펠러의 변형된 흔적이라 평가됩니다. 만일, 사고 당일 21:22에 그대로 어뢰를 맞아 침몰한 것이라면 프로펠러가 이렇게 전진시 구동방향과 반대로 휘거나 부러질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이외에 어뢰를 맞았음에도 내부에 형광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 가정용 형광등임에도 초기단계에서 국방부는 ‘방폭 형광등’ 이기에 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갑 제19호증, “천안함’ 생존 형광등’ 일반 가정용으로 추정돼“, 2010. 7. 20. 프레시안 기사) 이외에도, 생존자가 고막파손등 없이 멀쩡하게 활동하고 있는 점, 시체에 탄흔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점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하여 천안함의 내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 민군합동조사단의 구성과 국내외 조사단 명단, 각 분과와 분과원별 조사 과제와 임무, 조사단 각 개인과 분과를 포함하여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의 목록 및 각 문서의 목차

피고 국방부 장관이 민군합동조사단의 구성과 국내외 조사단의 명단을 공개하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조사단 각 개인의 분과를 포함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도 명확히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

저히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침몰된 함선의 인양을 수십건 해온 전문가가 조사단에서 배제되었는가 하면, 폭파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폭파전문가라고 행세하는 등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선정이 있었던 바, 선정이 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이들이 어떠한 조사결과를 수행하였는지, 조사의 토론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실제로 조사는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타) 사고 당일 사고 발생시점 기준 반경 50km 이내에 있었던 한국군과 미군측 함정의 종류와 수, 실제거리를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보고문서의 목록

이 항목이 사실 가장 국가안보와 밀접하고, 국가의 외교기밀사항과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당시에 ‘공개적으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한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된 이상, 어떠한 내용의 군사훈련을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더라도, 사고전후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한 군함의 수나 사고에 대한 대처여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파) 감사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감사원은 천안함에 2010. 6. 10. 중간발표를 통해 “감사위원회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군 위기대응 체계 및 구조활동과 관련

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총 10건의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전투 준비, 대응조치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습니다. (갑 제20호증, 감사원 천안함 관련 25명 징계, 김태영은 제외, 2010. 6. 10. 프레시안 기사)

하지만, 이 내용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감사 보고서는 물론 징계 대상자 명단과 직책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징계대상자가 된 자들의 직무유기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처분 수위를 ‘징계’ 통보에 그친 이유도 불분명합니다.

또한, 감사원은 ① 천안함의 침몰당시 천안함과 함께 해상군사훈련중인 속초함이 포격한 대상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고, ② “어뢰 피격 가능성” 을 전제로 한 군의 발표 내용에 근거해 감사를 벌여 침몰 원인 규명 측면에서는 한계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③ 위에서 진술한 바, ‘침몰 순간 TOD 동영상 존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OD 동영상의 최초 녹화 시각을 사고 발생 3분여 후인 오후 9시25분38초로 단정하는 등 각종 의혹 사항에 대해 전혀 그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실감사에 대한 의혹도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를 통하여 해소되어야 합니다.

### (3) 이 사건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위법성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알 권리로 인정하면서 이러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권임을 선언하였습니다(헌재 1989. 9. 4. 88헌마22, 판례집 1, 176, 188-189).

그런데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전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를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사실상 사문화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바, 상대적으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일반 국민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필요함은 다언(多言)을 요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서 실현될 국민의 알 권리는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표리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서 인정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을 통해서 보장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법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는 군사기밀이라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국가안 정보장을 위한 필요최소한도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도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에서(1992. 2. 25. 89헌가104 전원

재판부) 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제7조, 제10조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군사상의 기밀”이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는 명백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지 축소하려는 데 있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적 가치”를 가졌다고 어느 일반인이 보아도 생각할 수 없는 이상,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함선이 침몰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함선의 침몰의 원인이 되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우선, 전자는 비밀이랄 것이 없습니다. 후자가 실질적인 비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선의 침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중요한 국가안보의 구성요소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어떠한 군사안보적 충돌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충돌원인이 무엇인가를 국가가 지득하고 적국에 대한 대응카드로 쥐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 비밀’입니다. 이러한 실질적 비밀은 ‘국가이익’을 위해서 국가 지도자의 판단에 따라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국가적 이익의 비밀을 결정할 천안함 사건의 침몰 원인에 대하여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공개되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비밀의 공개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미, 합조단의 조사 결과는 이번 천안함 사건의 원인으로 ‘어뢰’에 의한 함선의 침몰이라고 결론 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선의 침몰의 원인되는 사실은 이미 국방부에 의하여 모두 공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부수한 함선의 침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구성요소의 내용 역시 실질적인 비밀의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비밀성을 상실한 정보가 더 이상 국가안전보장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이상, 정보공개 되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비밀성을 갖추지 않은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피고의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에 정해진 정보공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 없는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 4.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바탕으로 한 정보공개요구를 침해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의 1내지2, | 결정통지서  |
| 1. 갑 제2호증,       | 검찰, ‘천안함 좌초’ 주장 신상철씨 기소, 2010. 8. 27. 오마이 뉴스기사 |
| 1. 갑 제3호증,       | 민·군 합동조사단 천안함 중간조사 결과, 2010. 4. 8. 자 국방뉴스      |

1. 갑 제4호증, 천안함 조사 결과 보고서중 폭발에 관한 내용 일부
1. 갑 제5호증, 야당·시민단체 “천안함 국정조사를”, 2010. 9. 14. 자 한겨레기사
1. 갑 제6호증, 수중 폭발 입증할 ‘물기둥’ 목격자·TOD 영상도 없어, 2010. 9. 13.자 경향신문기사
1. 갑 제7호증, 감사원, “軍 TOD 영상 편집공개해 국민불신 초래“, 2010. 6. 10.자 머니투데이 기사
1. 갑 제8호증, “천안함 KNTDS 소멸, 軍발표 침몰지점서 600m 떨어져“, 2010. 5. 25. 민중의 소리 기사
1. 갑 제9호증, 김충환 “군 당국, KNTDS 즉각 공개하라“, 2010. 4. 8. 자 뉴스엔뉴스 기사
1. 갑 제10호증, 유용원의 군사세계 토론코너중 초계함에 관한 부분
1. 갑 제11호증, KBS “고 한주호 준위 '제3 장소'에서 사망”, 2010. 4. 9.자 미디어 오늘 기사
1. 갑 제12호증, “북한 어뢰 증거가 카탈로그? 자료 보고 허무했다”, 2010. 6. 24. 자 오마이뉴스 기사
1. 갑 제13호증, 해난구조 전문가 “천안함 어뢰추진체는 물속서 4~5년 된 것”, 2010. 7. 13. 자 한겨레 기사
1. 갑 제14호증, “이것이 과학인가?“…천안함 합조단의 '3대 과학적 결함', 2010. 6. 21. 프레시안 기사
1. 갑 제15호증, 북 잠수정 기지 이탈, 제대로 확인했나, 2010. 6. 25. 자 한겨레 기사
1. 갑 제16호증, 소형 잠수정에서 1.7톤짜리 중어뢰 발사했다?,

- |             |   |
|-------------|---|
|             | 2010. 5. 21. 자 민중의 소리 기사                                |
| 1. 갑 제17호증, | 참여연대 참관 보고서   |
| 1. 갑 제18호증, | “천안함 합조단, 스크루 변형 원인 오류도 시<br>인” , 2010. 7. 9. 자 피디저널 기사 |
| 1. 갑 제19호증, | “천안함 '생존 형광등' 일반 가정용으로 추정돼<br>“, 2010. 7. 20. 프레시안 기사   |
| 1. 갑 제20호증, | 감사원 천안함 관련 25명 징계, 김태영은 제외,<br>2010. 6. 10. 프레시안 기사     |

###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각 3통
- 1. 납부서 1통
- 1. 위임장 1통
- 1. 소장부분 3통

2010. 9.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正平)  
담당변호사 변호사 심 재 환  
변호사 권 정 호  
변호사  
변호사

# 서울행정법원 귀중

<별지1> 원고 목록

## <별지2> 정보공개 청구 대상 목록

### □ 천안함 관련 군(軍)기관 정보공개청구 목록

1.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와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

정보보유기관	국방부장관
정보 비공개 해당 항목	[비공개] 제9조 제1항 제2호
정보비공개사유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및 관련자료가 공개될 경우, 초소의 위치나 지형물 등이 적에게 노출되어 적의 침투를 감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음.

2.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작성된 천안함의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KNTDS 등의 항해관련 자료 및 문서 사본 일체, 혹은 이를 평문화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혹은 그 목록. 그리고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천안함 항적에 따른 수심층에 관해 조사된 자료 일체

정보보유기관	국방부장관
정보 비공개 해당 항목	[비공개] 제9조 제1항 제2호

정보비공개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안함의 조타사 일지는 침몰시 유실되어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지 않음</li> <li>-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작성된 천안함 조타사 일지, 항적기록, KNIDS 등의 항해관련 자료 및 사본 일체, 혹은 이를 평문화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자료 일체, 혹은 그 목록' 은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방(군사작전)에 관한 사항이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li> <li>- 항적기록, KNIDS 등의 항해관련 자료 및 이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등은 군사비밀에 해당되며 이를 평문화할 수는 없음</li> </ul>
일부 공개 정보	[공개] 3월 26일일 천안함 항적에 따른 수심층에 관해 조사된 자료와 관련하여, '백령도 근해 조류분석' 자료 공개

3.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천안함 관련하여 주고받은 해군 혹은 해경의 교신기록 사본, 혹은 평문으로 정리된 보고서, 혹은 이에 대해 요약하여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혹은 그 목록(국방부장관)

정보보유기관	국방부장관
정보 비공개 해당 항목	[비공개] 제9조 제1항 제2호
정보비공개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군 교신기록 공개시, 암호화된 군 작전통신체계가 적에게 노출되며, 이는 특정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교신용어와 암호통신문을 상호 대조시, 향후 암호화된 우리 군의 교신내용이 적에 의해 판독되어 암호화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임.</li> <li>-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교신기록 자체가 군사비밀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를 평문화할 수는 없음. 따라서 교신기록과 관련자료는 군사비밀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음.</li> </ul>

4. 3월 26일 오후 9시부터 3월 30일까지 국방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2함대사령관이 구조, 인양, 경계, 추적 등과 관련해 내렸던 지시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그 자료 및 문서들의 목록

정보보유기관	해군 제2함대 사령관 합참의장
정보 비공개 해당 항목	[비공개] 제9조 제1항 제1, 2호

정보비공개사유	- 군사기밀이거나 비공개 정보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공개시 군 작전에 심대한 지장 초래
---------	---

[해군참모총장 답변]청구인이 요청한 1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작전지휘권한을 갖지 않으므로 지시사항 없음

5. 2008년 이후 천안함의 수리와 정비 일지 일체, 관련된 문서목록

정보보유기관	해군 제2함대 사령관
정보 비공개 해당 항목	[비공개] 제9조 제1항 제1, 2호
정보비공개사유	- 군사기밀이거나 비공개 정보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공개시 군 작전에 심대한 지장 초래

6. 故 한주호 준위의 사망 관련, 고 한주호 준위의 사고 당시 임무, 사망으로 이끈 작전 수행 지점, 그리고 사망 이후 해병대, 해군,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그 문서 목록

정보보유기관	해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해군특수전 여단
정보 비공개 해당 항목	[비공개] 제9조 제1항 제1, 2호
정보비공개사유	- 군사기밀이거나 비공개 정보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공개시 군 작전에 심대한 지장 초래
일부 공개 정보	해군참모총장의 경우, 한주호 준위 사망이후 참모총장 지시사항중 고 한주호 준위와 관련된 사항공개

7. 국방부가 5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증거문서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서, 북한이 이란과 중남미 등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북한산 무기소개 책자(카달로그)’, 혹은 CHT-02D 어뢰의 소개자료 혹은 그 설계도. 그리고 CHT-02D의 부품으로서 천안함 침몰에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는 추진체

및 스크루의 근접 촬영 사진 일체

8. 연어급 잠수함의 제원, 성능, 잠항능력, 장착 어뢰 등 공격능력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일체

정보보유기관	국방부 장관
정보 비공개 해당 항목	[비공개]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4조 제3항, 제8조 제1항
정보비공개사유	- 국방(군사작전)에 관한 사항이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9. 디젤엔진실, 가스터빈실 촬영사진 일체, 절단면 사진 일체를 포함하여, 천안함 인양 후 촬영된 천안함 함체, 부품 사진, 입체영상자료 일체

정보보유기관	국방부 장관
정보 비공개 해당 항목	[비공개] 제9조 제1항 제2호
정보비공개사유	- 천안함과 같은 종류의 초계함(PCC급)은 현재에도 20여척이 해군의 주요 함정으로 운용중에 있음 - 디젤엔진실, 가스터빈실 촬영사진, 절단면, 부품 사진, 입체영상자료 등 함체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함정의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될 수 있음

10. 천안함과 북측 CHT-02D 어뢰의 잔해물로 여겨지는 증거물품에서 검출된 화약과 알루미늄 산화물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보고서 일체

정보보유기관	국방부 장관
정보 비공개 해당 항목	[공개]

11. 민군합동조사단의 구성과 국내외 조사단 명단, 각 분과와 분과원별 조사

과제와 임무, 조사단 각 개인과 분과를 포함하여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의 목록 및 각 문서의 목차

정보보유기관	국방부 장관
정보 비공개 해당 항목	[공개] 민군합동조사단의 구성과 국내외 조사단 명단, 각 분과와 분과원별 조사과제와 임무 [비공개] 조사단 각 개인과 분과를 포함하여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의 목록 및 각 문서의 목차에 대해서는, 조사단에서 각종 보고서를 분류 및 목록화하는 작업은 진행중

12. 사고 당일 사고 발생시점 기준 반경 50km 이내에 있었던 한국군과 미군 측 함정의 종류와 수, 실제거리를 알 수 있는 자료 일체 혹은 보고문서의 목록

정보보유기관	합동참모의장
정보 비공개 해당 항목	[공개] 천안함 침몰사건 발생시 천안함 기준 50km 이내에 있었던 한국국 함정은 고속정 5척(대청도 인근) 및 초계함 1척(천안함 남쪽 약 49km)이었으며, 미군 함정은 없었음.

#### □ 천안함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목록

1. 2010년 6월 10일 발표한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결과(중간결과) 목차,
2. 2010년 6월 10일 발표한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결과(중간결과) 요지,
3. 2010년 6월 10일 발표한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실태 감사결과(중간결과) 전문

정보보유기관	감사원
정보 비공개 해당 항목	[비공개] 제9조 제1항 제1, 2호
정보비공개사유	- 군사기밀이거나 비공개 정보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공개시 군 작전에 심각한 지장 초래